

결핵예방법령 개정

송태성 / 보건사회부 방역과 사무관

1. 기나긴 터널을 지나

결핵예방법령이 오랜 산고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년여 동안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정리, 문안정리, 관련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문을 다시 정리하고 경제장·차관회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안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법안심의소 위원회의 축조 심의를 거쳐 보사부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후 본회의 상정 의결, 정부 공포의 긴 과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개정법률로 확정되고, 법률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드디어 법령 정비가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기나긴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어려움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는가마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학생들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의무화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의 협의과정, 대한결핵협회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문제로 인한 재무부와의 협의, 그리고 1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BCG 예방접종 의무화 조항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의 진통 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이와 같이 갖은 우여곡절과 힘든 과정을 거쳐 개정된 결핵예방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결핵예방법의 주요개정내용

가. 지나온 과정

결핵예방법은 정부가 결핵사업을 직접 관掌하기 시작한 지 만 5년이 되는 1967년 1월에 제정된 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에 1차 개정을 한 바 있으나 법령의 내용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하겠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환자에게 약제의 고귀

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건소의 제반 환경이 열악하였고 게다가 주민들에게 거저 주는 약은 별 효험이 없는 약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라서 그러한 발상이 나왔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발상을 잘못된 것 같고 따라서 이번 개정과정에서 재개정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이제는 개정 당시의 취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징수된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비시지 예방접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조항 정비

◆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조항 신설(제11조)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의 보호자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한 퇴원전에 접종하게 함으로써 결핵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결핵성뇌막염, 속립성결핵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생아 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제12조 등)

출생후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어린이는 역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 증명서는 접종을 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제18조).

또한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분기마다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 의료기관의 환자발생신고 의무강화

◆ 의료기관의 환자발생신고의무 (제20조)

결핵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하여 종래에는 그 환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병원 관리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보고서식을 완전 개정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보고서 작성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신고의무 불이행시의 처벌강화 (제42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전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했던 신고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본란을 통하여 강조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겠다.

3) 결핵환자의 취업금지 (제23조, 24조)

◆ 결핵환자의 취업금지 완화

전염성 결핵환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접객업이나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전염성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정지당한 자라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복직을 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을 금지하거나 복직을 불허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제42조).

◆ 취업금지 업무의 엄격한 제한

(시행규칙 제12조)

전염성환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업무 이외에는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즉 이용업, 미용업, 식품접객업,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동보조(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업무.

◆ 전염성 소실판정 의사의 범위 확대

(시행규칙 제13조)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의사

의 범위를 종래에는 결핵과 전문의로 한정하였으나 결핵과 전문의 이외에 보건소장(의사에 한함), 보건소 근무 의사 및 전염성환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도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와 같이 결핵환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하도록 한 이유는 지금은 우수한 항결핵제가 보급되어 전염성 결핵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경우 단시일내에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환자가 과거와 달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염성환자라 함은 가래침 도말검사에서 군이 검출되는 환자에 국한됨을 부언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도소에 재소중인 결핵환자 역시 전염성인 경우에 한하여 격리 수용하도록 하였다(제26조).

4) 비현실적인 내용의 정비

◆ 건강진단 방법 개선(구법 제6조)

건강진단 방법 중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반응검사후 결핵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던 종래의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는 비시지 예방접종은 국민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거의 100% 완료될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 대부분 결핵균에 감염(자연감염 또는 비시지에 의한 감염)되어 있으므로 결핵 예방접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1조의 전문개정, 법제16

조, 제17조는 이를 삭제하였다.

◆ 가래침 타구시설 설치의무의 폐지 (구법 제27조)

결핵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을 경영하는 자는 가래침 타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역시 국민 위생수준의 향상으로 사문화된 내용이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5) 기타 개정내용

◆ 결핵병원 등의 개설허가 권한 위임 (제28조, 제30조)

종래에는 결핵병원이나 결핵요양소 및 결핵진료소 등의 설치허가 권한이 보사부 장관에게 있었으나 결핵병원의 설치허가는 의료법의 관계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결핵요양소와 결핵진료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제36조의 2)

제36조의 2를 신설하여 결핵협회가 제32조의 사업(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협회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 관리청과 협회와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4조의 2).

이와 같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 건물을 국유지에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으나 무상 사용기간인 '95년말경에 종료됨에 따라 '95년 12월부터는 연간 약 5억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핵협회의 존재 의의가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지원하여 결핵퇴치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내용을 명백화하였다(제38조, 제39조, 제40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
 - 신생아 외의 자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관, 결핵 예방접종의 공고,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지역사회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 결핵예방약품(BCG, PPD)의 생산보조비
 - 사설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 경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결핵병원 등의 설치와

-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 사업주 등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 ◆ 기타 별금액의 현실화 및 일부 별금을 과태료로 전환(제41조, 제42조, 제43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
 -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관계자가 업무상 지득한 환자에 관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때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사부 장관의 입원명령서에 의한 입원신청을 받은 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때
 -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정기건강진단 실시의무자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다만 각급 학교의 경우 경비를 부담할 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의 발생 및 사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전염성 결핵환자가 보사부 장관의 취업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한 때
 -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한 때와 전염성

- 소실의 판정이 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때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립의 결핵요양소나 진료소를 개설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강진단 수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한 때
 - 건강진단 실시자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때
 -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의 입원명령에 불응한 때

기타 시행규칙상의 모든 서식(1호 내지 9호 서식)을 전면 개정하였다.

3. 맷는말

이상 결핵예방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였으나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 하려다 보니 다소 장황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일선 보건소 등에서 직접 결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요원은 물론이고 결핵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
이 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명예퇴임하고 1994년 10월 1일부로 한국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